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박완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4. 25.

발 의 자 : 박완수 · 김현아 · 정갑윤  
유동수 · 함진규 · 정태욱  
윤영석 · 김용태 · 김재원  
박덕흠 · 김선동 · 강석진  
김정훈 · 조경태 · 이종명  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러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을 고려하였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함.

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, 이용자가

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·차단,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4조,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등).

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”을 “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”로 한다.

1.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
2.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

제4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전단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 또는 제2항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전단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 또는 제2항에”로, “여부를”을 “여부, 정보의 명백한 거짓 또는 왜곡 여부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2항에”를 “제3항에”로 한다.

②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제4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4조의3(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등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·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정보의 권리의 침해 여부, 정보의 명백한 거짓 또는 왜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3항 후단, 제5항 후단 및 제6항을 준용한다.

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된 제44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통계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제1호부터”를 “제1항제1호·제2호·제2호의2, 제3호부터”로 한다.

2의2.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「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

제7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4조(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) ① 이용자는 <u>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<u>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·교육·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</p>	<p>제44조(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) ① 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<u>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</u></p> <p>2. <u>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u>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</p>

① (생략)

<신설>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·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제44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-----  
 제1항 또는 제2항에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-----  
 제1항 또는 제2항에-----  
 -----  
 -----여부, 정보의 명백한  
 거짓 또는 왜곡 여부를-----  
 -----  
 -----

치(이하 “임시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

⑤ (생략)

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.

제44조의3(임의의 임시조치) ①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,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⑦ -----  
-----  
-----  
제3항에-----  
-----  
-----

제44조의3(정보의 삭제 및 임시

조치 등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·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정보의 권리의 침해 여부, 정보의 명백한 거짓 또는 왜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


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3항 후단, 제5항 후단 및 제6항을 준용한다.

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된 제44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통계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-----
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



3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